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16. 8. 3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8일(목), 마포구청장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월)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5.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7일자로 합정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1)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 제2조 관련 별표)

가. 종전 : “동교로8길 58”

나. 변경 : “월드컵로5길 11”

6.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합정동주민센터가 2016. 6. 27. 종전 소재지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1)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변경함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제2조 별표 중 동주민센터의 합정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동주민센터(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당초	합정동	동교로8길 58 (합정동)
변경	합정동	월드컵로5길 11 (합정동)

- 3)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 중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그 간 합정동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부여 추진사항을 보면

- 2016. 6. 2. : 건축 시행사에서 부동산정보과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2016. 6. 8. : 합정동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를 월드컵로 5길 11(합정동)으로 부여받았으며,
- 2016. 6. 9. :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후 도로명주소를 공고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16. 7. 7 ~ 7.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도 없으며, 또한 합정동주민센터가 2016. 6. 27. 신축 이전됨에 따라 2016. 6. 8. 부동산정보과로부터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받아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합정동주민센터가 “월드컵로5길 11”로 신축 이전하고 행정사

무를 시작한 2016. 6. 27.로 합정동주민센터소재지 변경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